

●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-4호

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202)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2월 13일

국립소방연구원장

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202) 일부개정 공고

1.3.1 중 “2022년 12월 1일”을 “2023년 2월 13일”로 하고, 1.5.1 중 “「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TC 202)」에”를 “기준에”로 하며, 1.5.2 중 “제정 기준이”를 “개정 기준이”로, 같은 코드 중 “제정 기준에”를 “개정 기준에”로 한다.

1.8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8 다른 공고의 개정

1.8.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3A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2.7.1.5 부분 중 “5층(지하층을 제외한다)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,000㎡를 초과하는”을 “11층(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) 이상의”로 하고, “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”,를 “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한하여”로 하고 “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·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”,를 “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·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”로 한다.

1.8.2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4A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2.9.1.6 부분 중 “5층(지하층을 제외한다) 이상의”를 “11층(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) 이상의”로 하고, “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”,를 “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한하여”로 하고 “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”,를 “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”로 한다.

1.8.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3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2.6.1.6 부분 중 “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,000㎡를 초과하는”을 “11층(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) 이상의”로 하고, 2.6.1.6.1 중 “직상층에”를 “직상 4개층에”로 하며, 2.6.1.6.2 중 “직상층”을 “직상 4개층”으로 한다.

1.8.4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3B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2.6.1.5 부분 중 “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,000㎡를 초과하는”을 “11층(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) 이상의”로 하고, 2.6.1.5.1 중 “직상층에”를 “직상 4개층에”로 하며, 2.6.1.5.2 중 “직상층”을 각각 “직상 4개층”으로 한다.

2.1.1.7 부분 중 “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,000㎡를 초과하는”을 “11층(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) 이상의”로 하고, 2.1.1.7.1 중 “직상층에”를 “직상 4개층에”로 하며, 2.1.1.7.2 중 “직상층”을 “직상 4개층”으로 한다.